## 5.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

- (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도서, 현장조건,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조 치사항,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요인 을 제거하거나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(3) 시공자는 고소작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재료 .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
  - (나) 올바른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실시
  - (다)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
- (6) 충전전로의 근접 작업시에는 고압선 등 전력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의 접근 한계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하고,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 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소화기, 방화수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8) 절단, 절삭, 용접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사용하고, 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강풍 시 고소에 있는 상부 자재 등이 낙하 및 비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.